



6월 고양행•재정 컨설팅



정근수당



정근수당

■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율:**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공무원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

- 1) 징계처분: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 2)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함 (n/6개월)
- 3) 신규채용: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봄
- 4) 휴직처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함 / 이외에 휴직의 경우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함

[Tip] 휴·복직자의 정근수당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1, 2번 지급 필수조건)

- 1) 1.1 / 7.1 기준 봉급이 지급 되는가?
 - 봉급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 예컨대 유학휴직(50%), 질병휴직(70% 또는 50%)
- 2) 지급대상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었는가?
- 3) 휴직사유가 근무연수에 인정되는가?
 - 인정(예컨대 군복무, 유학휴직, 육아휴직 등)
 - 미인정(예컨대 질병휴직, 가사휴직 등)

정근수당

◆ 타시도 전입 및 사립특채자 확인

- 정근수당 전액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스인사가 새로 생성되어 정근수당이 4/6만 지급처리됨
(년도별급여총지급현황에 이전 급여내역이 없음)
정근수당은 조정수당에서 수정해야 함

◆ 휴직자 및 복직자의 확인

- 휴직자는 미지급(본봉이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할 수도 있음)
복직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지급대상 확인 및 지급월 확인 (교육자료와 수당지침 확인)

◆ 징계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여부 확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첫 정근수당은 미지급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 ◆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과오 지급사례에 따른 확인
 - 신규채용에 따른 지급월 확인
(동일교의 과거 근무자는 신규등록이 아닌 과거 인사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6개월분이 전액 지급되는 과오지급 사례)
 - 신규채용된 기간제교사의 경우 인사에 호봉만 기록, 근무년수 입력 누락으로 미지급되는 사례
 - 재임용된 기간제교사의 경우 호봉만 변경하고 근무년수는 변경하지 않아 과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례

Q1. 2020.03.01부터 2020.04.29까지 병가, 2020.04.30부터 2020.12.31까지 질병휴직 시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휴직중이나 봉급의 일부(50% or 70%)가 지급되고 있으며, 1월~3월까지 실제 근무하였고, 4월에도 15일 이상 근무하여 1개월로 인정하는 바, 총 4개월인 4/6를 지급해야 함

⇒ 2021년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으므로, 봉급의 일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정근수당은 미지급

Q2. 2020.01.01. 자로 육아휴직을 하였고 2020.06.15. 자로 복직하였을 경우 2020년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정근수당 지급요건이 아닌 근무연수 계산과 처분기간 산정 시 해당 되는 내용임

⇒ 따라서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란 6월 1일 이전에 복직하여 봉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6월 15일에 복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Q3. 2020.1월 한 달간 출산휴가를 쓰고 2020.2.1.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2020년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육아휴직수당은 "봉급"이 아닌 "수당"의 한 종류로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지급 대상

Q4. 2019.03.1.~2020.05.31.까지 첫째아이로 1년 3개월간 육아휴직 후 2020년 6월 1일 복직한 교원의 경우 2020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인정개월수는?

⇒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바(단,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인정), 2020년 3월~5월은 1년을 초과한 휴직기간이므로 3/6만 지급

Q5. 2020.05.18. 자 신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7월 지급될 공무원 정근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기간제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정근교원 보수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고 할 지라고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신분이 유지되므로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내 다른 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됨을 유의

⇒ 따라서 지급대상 기간은 현재 소속교에서 실제 근무기간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6만 지급(5월은 14일만 근무하였기에 계산하지 않음)

Q6. 1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인 기간제교원은 정근수당을 일할계산 하는지?

(정확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 2020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정)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5일로 종료되었다면 2020년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바, 미지급 대상임

Q7. 동일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퇴직과 재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을 때 정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재계약 후의 기간만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혹은 퇴직 이전 기간까지 포함해야하는지)

⇒ 같은 기관과 계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공백 혹은 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이전 계약한 기간도 인정하여 지급(즉, 단절된 기간만 제외)

Q8. 기간제교원이 A학교에서 2월 14일 퇴직 후 3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이 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액은 얼마가 되나요?

(정확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 (가정)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2020.01.01. ~ 2020.02.14. / 2020.03.01. ~ 2020.12.31.

⇒ 2020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총 5개월(①+②+③)을 근무한 바, 5/6을 지급함

① 2020.01.01.~ 2020.01.31. (1개월)

② 2020.02.01.~ 2020.02.14. (14일) -> 15일 미만

③ 2020.03.01.~ 2020.06.30. (4개월)

Q9. 기간제교사가 B학교에서 3월 9일자로 퇴직 후, 6월 10일자로 다시 계약 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얼마가 되나요?

(정확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 (가정)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2020.01.01. ~ 2020.03.09. / 2020.06.10. ~ 2020.12.31.

⇒ 2020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급여를 1월이상 받아야 지급대상임. 퇴직후 다시 채용되더라도 급여를 1월 이상 받아야 함. 6월10일자면 1월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1월이상 급여를 받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됨

[Tip] 기간제교원 정근수당 과오지급 사례에 따른 확인

- 1) 신규채용에 따른 지급월 확인(동일교 과거 근무자는 신규등록이 아닌 과거 인사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6개월분이 전액 지급되는 과오지급 사례)
- 2) 신규채용된 기간제교원의 경우 인사에 호봉만 기록, 근무연수 입력 누락으로 미지급되는 사례
- 3) 재임용된 기간제교원의 경우 호봉만 변경하고 근무연수는 변경하지 않아 과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례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

2009년~2010년		육아휴직수당은 50만원
2011년~ 2018년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개시일 월봉급액 * 40% * 85% (단, 40%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100만원 이상인 경우 85만원만 지급)
	2017.9.1.~	휴직시작일부터 첫 3개월간 월봉급액 * 80% * 85% (단, 80%의 상한금액은 150만원, 하한금액은 70만원)
2019년 개정	육아휴직 첫 3개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자녀당 1년의 휴직기간중 첫 3개월을 말함>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월봉급액의 40%→50% 상한액 100만원→120만원, 하한액 50만원→70만원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

* 각 자녀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동일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 부부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휴직자에게는(부부 동시휴직시에는 1인) 월봉급(본봉)의 100%를 최초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 한다.

☞ 2015년 신설-최초 1개월분 지급 (상한액 150만원)

☞ 2016년 개정-최초 3개월분 지급 (상한액 150만원)

☞ 2017년 7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같은 자녀로 두 번째 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한다.

적용기간 2017.07.01~2018.06.30

☞ 2018년 7월 1일 개정

모든 자녀에 대하여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 상한액 동일 적용

☞ 2019년 1월 1일 개정

모든 자녀에 대하여 최초 3개월간 월 250만원 상한액 적용

(※4월~12월 일반 육아휴직수당과 동일하게 지급)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 지급대상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 지급기준

[2017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수당을 받은 경우 - 첫 3개월간 지급액]

◆ 휴직개시일 월봉급액 * 80%를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은 공무원은 80%의 15%를 복직합산금으로 지급(단, 80%의 상한금액은 150만원, 하한금액은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12개월까지 지급 비율]

◆ 2018년까지 = 휴직개시일 월봉급액 * 40% * 15%

◆ 2019년부터 = 휴직개시일 월봉급액 * 50% * 15%

◆ 육아휴직수당 총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복직합산금 해당없음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을 받은 경우]

◆ 휴직개시일 월봉급액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은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100% 또는 상한선의 15%를 복직합산금으로 지급(수당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해당규정 연도별 확인 필요)

육아휴직수당 산정방법

- ◆ 자녀를 기준으로 최초 휴직당시(휴직개시일) 본봉액 지급
- ◆ 복직 후 같은 자녀로 재휴직 시
 - 호봉이나 본봉의 변화없이 같은 금액으로 지급
(이 때 해가 바뀌어 본봉이 올랐더라도 처음 본봉 기준금액으로 지급함)
 - 첫째자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실제 근무하거나,
출산으로 인한 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다시 동일 자녀(첫째)로 휴직할 경우에는 재휴직 들어가는 날을 휴직개시일로 하여 오른 호봉이나 본봉 기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함
- ◆ 첫째자녀 휴직종료 후 복직과 동시에 둘째자녀로 재휴직 시
 - 호봉의 변화는 없으나 둘째자녀 휴직일을 기준,
오른 본봉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

Q1. 2007년 3월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특수교육지도사) 육아휴직 시 지급 가능한 수당의 종류와 유의해야 할 사항은?

⇒ 2015.2.28 이전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자녀당 최초 1년간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EDI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무직원 급여 때 설명할 예정)

Q2. 교사가 1일자 육아휴직이 아닌 중간일자로 휴직 및 출산휴가시 월급 계산 방법, 출산휴가시에는 시간외수당(정액분)을 제외한 모든 수당이 지급되나요?(교직수당과 교원연구비 지급되는지 여부) (2020.8.31. ~ 11.6. 육아휴직 및 11.7.~2021.2.6. 90일 출산휴가) 급여관리

⇒ 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56페이지~5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사는 기본급(50,000원)만 지급하고 학생지도 가산금(5,000원)은 미지급하며, 그 해당 교사의 대체강사는 기본급 및 학생지도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 교원이 보직교사라면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인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3. 2010. 5. 1.~2012. 2. 28. 육아휴직(첫째) 후 복직. 2012. 3. 1.~2014. 2. 28. 근무하였으나 복직합산금 지급되지 않음. 2014. 3. 1.부터 다시 육아휴직(첫째)과 질병휴직을 지속해오다 2018. 10. 14.부터 육아휴직(둘째)에 들어간 교사가 복직, 6개월 만근 시 복직합산금 첫째(소급분) 및 둘째 총 합산금액은?

(참고자료 - 경력사항 전체)

2010.05.01~2012.02.29 육아휴직(첫째)

2012.03.01.~2014.02.28. 00고등학교-복직합산금 미지급

2014.03.01~2014.08.31 육아휴직(첫째)

2014.09.01~2014.12.31 질병휴직

2015.01.01~2017.02.28 □□고등학교

2017.03.01~2017.11.23 질병휴직

2017.11.24~2018.07.15 육아휴직(첫째)

2018.07.16~2018.10.13 □□고등학교

2018.10.14~현재 육아휴직(둘째)

2021. 3. 1. □□고등학교 복직 예정

⇒ 육아휴직수당(첫째) 지급기간: 2010.05.01. ~ 2011.04.30. (1년간)

2009~2010년 육아휴직수당은 50만원 정액으로 육아휴직 복직합산금이 없습니다. 2011년의 경우 육아휴직수당이 [휴직개시일 월봉금액*40%*85%]으로 계산되나 40%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이 지급되므로 만약 질의하신 교원이 이에 해당 된다면 복직합산금이 없습니다.

⇒ 육아휴직수당(둘째) 지급기간: 2018.10.14. ~ 2019.10.13. (1년간)

2021.3.1.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2021년 9월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복직 합산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4. 육아휴직 -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할 시 복직합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6개월의 기간에 출산휴가 90일의 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복직합산금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므로 휴직종료 이전의 출산휴가 90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2017.09.01.~2019.12.10. 육아휴직(첫째) 사용 후 2019.12.11. 복직하신 선생님께서 바로 2019.12.11.~2020.03.09.까지 출산휴가(둘째)에 들어가시고, 2020.03.10.~2020.08.24.까지 육아휴직(둘째) 사용중이신데요, 이분 육아휴직(첫째) 복직합산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2020년 6월에 미지급하고 육아휴직(둘째)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산해서 드리는게 맞나요? 아니면 2019.12.11.~2020.03.09.까지 3개월을 근무하신걸로 보고 2020년 8월 복직 후 3개월차에 육아휴직(첫째) 복직 합산금을 드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복직합산금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2020.8.24.자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2021.2.23.) 근무하신다면 2021년 3월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Q6.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을 지급할 때 일할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일할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육아휴직기간을 전체 1년으로 잡고 계산한것보다 금액이 약간 적어집니다. 총액 기준으로 전체액수가 맞게 지급해야하는지, 일할계산을 한 금액으로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였다면 일할계산된 금액에서 85% 지급하고 나머지 15%를 복직합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총액으로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지급하여 차액만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단, 원단위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원단위 절사로 인하여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Q7.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때 역에 의한 계산법으로 일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2017.5.22~2018.2.28로 1회차 휴직을 들어가고 2020.3.1.자로 2회차 휴직을 들어갔을 때 역에 의한 계산법에 따르면 17.5.22~18.2.28(9개월7일) + 20.3.1~20.4.23(1개월23일) (질문자 쓴 날짜 : 20.3.1~20.4.23(2개월 23일)) 로 계산이 되는데 나이스는 17.5.22~18.2.28(9개월10일) + 20.3.1~20.4.23(1개월20일)(질문자 쓴 날짜 : 20.3.1~20.4.20(1개월 20일)) 로 자동계산될 경우 어느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나요?

⇒ 위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 나이스에서는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30일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휴직일자가 정확하다면 나이스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2017.05.22. ~ 2018.02.21. (9개월)
- ② 2018.02.22. ~ 2018.02.28. (7일)
- ③ 2020.03.01. ~ 2020.03.31. (1개월)
- ④ 2020.04.01. ~ 2020.04.23. (23일)

총 휴직일수 11개월임